

제 호

[]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

[]안전교육 위탁기관 []지정취소 · []업무정지 통지서

[]시험대행기관

기관	기관명	
	소재지	
	전화번호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처분내용	지정취소 년 월 일
	업무정지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(일간)
	사유

1.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10조제1항·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·제15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지정취소 []업무정지)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2.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해당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해양경찰청장

직인